

#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 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1천 만원
- 실제수납액 : 5백 만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수납액 : 5백 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50.0%(전년도 100.0%)임.

### 〈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 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합 계	—	10,256	5,128	—	5,128	50.0	50.0
세외수입	—	10,256	5,128	—	5,128	50.0	50.0
임시적 세외수입	—	10,256	5,128	—	5,128	50.0	50.0
기타수입	—	10,256	5,128	—	5,128	50.0	50.0
그외수입	—	10,256	5,128	—	5,128	50.0	5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2. 세출결산

○ 예산액 : 3억 9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3억 9천 5백만원

○ 지출액 : 3억 2천 7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6천 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7.0%(전년도 11.7%)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 1백만원, 지출잔액 5천 6백만원임.

### 〈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률 (%)
<b>총 예산</b>	394,719	327,435	-	67,284	17.0
<b>사업예산계</b>	258,123	219,731	-	38,392	14.9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258,123	219,731	-	38,392	14.9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55,244	37,267	-	17,977	32.5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4,100	37,267	-	6,833	15.5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1,144	-	-	11,144	100.0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111,100	100,649	-	10,451	9.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2,100	22,214	-	9,886	30.8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78,435	-	565	0.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1,779	81,815	-	9,964	10.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1,779	81,815	-	9,964	10.9
<b>일반예산계</b>	136,596	107,704	-	28,892	21.6
기본경비	136,596	107,704	-	28,892	21.6

-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256개, 현재액은 1억 2천 4백 1십 7만 8천원임.

〈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8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252	4	-	4	-	-	-	256
	금액	124,077	101	-	101	-	-	-	124,178
일반회계	수량	252	4	-	4	-	-	-	256
	금액	124,077	101	-	101	-	-	-	124,178

## Ⅱ . 검토의견

### 1. 세입결산

-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없이 512만 8천원을 징수하여, 전년(21만 4천원) 대비 491만 4천원이 증가 (2,296.3%)한 수준임.

※ 징수결정액(1,025만 6천원) 대비 실제 수납률은 50% (전년도 100%)임.

####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 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합 계	-	10,256	5,128	-	5,128	순증	50.0
세외수입	-	10,256	5,128	-	5,128	순증	50.0
임시적 세외수입	-	10,256	5,128	-	5,128	순증	50.0
기타수입	-	10,256	5,128	-	5,128	순증	50.0
그외수입	-	10,256	5,128	-	5,128	순증	50.0

#### 가. 세입예산 편성 철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중 “그외수입”의 발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으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위원회 소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1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법개정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신청에 따른 것임.

###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항〉

개정 전 (2018.9.20.까지)	개정 후 (2018.9.21.부터)
<p>제3조(정의)</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이란 <b>상시</b>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p> <p>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제3조(정의)</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p> <p>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 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환급액(총 1,025만 6천원) 발생을 통지받고 전액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였으나, 환급액 중 사용자 부담금(50%)만이 시에 귀속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50%만 수납됨으로써 세입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는 국민연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 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시민감사옴부즈만(7인) 모두 민간단체 등 출신자를 개방형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에 있어서 제반 규정의 숙지를 통한 적절한 업무 처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세입의 발생 및 부족 징수로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편성 없이 발생하는 등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없는 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3년간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없이 수납 발생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그외수입 (224-06)	2019	-	10,256,380	<b>5,128,190</b>	<b>5,128,190</b>
기타이자수입 (216-06)	2018	-	60,200	<b>60,200</b>	-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4)	2018	-	154,000	<b>154,000</b>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5 지난여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 2. 세출결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394,719천원) 대비 83.0%(3억 9,472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7.0%(6,728만원)로 전년(11.7%) 대비 전년 5.3% 증가한 수준임.

### 〈 2019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394,719	327,435	-	67,284	17.0
사업예산계	258,123	219,731	-	38,392	14.9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258,123	219,731	-	38,392	14.9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55,244	37,267	-	17,977	32.5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4,100	37,267	-	6,833	15.5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1,144	-	-	11,144	100.0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111,100	100,649	-	10,451	9.4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2,100	22,214	-	9,886	30.8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78,435	-	565	0.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1,779	81,815	-	9,964	10.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1,779	81,815	-	9,964	10.9
일반예산계	136,596	107,704	-	28,892	21.6
기본경비	136,596	107,704	-	28,892	21.6

### 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은 민원조정·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44,1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5.5%(683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예산현액 2,310만원)’의 불용률은 29.4%(678만원)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산출기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4,100	37,267	6,833	15.5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무관리비	합계	23,100	16,316	6,784	29.4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500	3,209	△709	△28.4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3,000	1,150	1,850	61.7
		민원배심법정 운영	17,600	11,957	5,643	32.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21,000	21,000	0	0

○ 산출기초 내용 중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지출(709천원, 128.4%)하고도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은 61.7% (1,850천원)를, ‘민원배심법정 운영’은 31.1%(5,643천원)를 불용처리 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분석 없는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의 비계획적인 편성과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에 대해 활용되는 ‘민원배심제’는 개최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전년도(2017년)와 같은 규모(17,600천원)로 편성하여 32.1%(5,643천원)를 불용처리 한바,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민원배심원제 확대 운영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 운영실적〉

(단위: 건)

구분 연도별	계	처리결과			
		인용	일부인용	조정·중재	기각
2019년	4	1	3		
2018년	9	3	2	1	3
2017년	12	6	1	1	4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결산액)	집행잔액
2019년	17,600	11,957	5,643(32.1%)
2018년	17,600	12,513	5,087(28.9%)
2017년	13,100	13,497	△397(103.0%)

#### 나.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사업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점검과 현장 민원살피미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시상 관련 사업으로 예산현액(11,144천원) 전부를 불용처리 하였음.
- 본 사업은 그동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도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2020년도에는 사업을 폐지하였음.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11,144	-	11,144	100.0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합계	1,144	-	1,144	100.0
		표창장 제작 구매	644	-	644	100.0
		현장점검 물품구입	500	-	500	100.0
	포상금	합계	10,000	-	10,000	100.0
		우수자치구 포상	10,000	-	10,000	100.0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회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사무 관리비	803	803	-	-	1,144	1,144	-	-	1,144	-	1,144	100.0
포상금	10,000	10,000	-	-	10,000	10,000	-	-	10,000	-	10,000	100.0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침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한바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b>01. 포상금</b>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과건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는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해 온 것인바, 포상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해 향후 위법한 예산의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시 감사조사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위원과

시민·주민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현액(32,100천원) 대비 불용률은 30.8%(9,886천원)이고,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16,100천원)의 불용률은 58.2%(9,372천원)에 달할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30%를 초과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2,100	22,214	9,886	30.8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합계	16,100	6,728	9,372	58.2%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1,100	3,328	7,772	70.0%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5,000	3,400	1,600	3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6,000	16,000	514	3.2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16,000	16,000	514	3.2

○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sup>1)</sup>」에 근거하여 주민감사 청구사항 발생 시 개최되며, 매년 개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 예산 불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실적 :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실적의 감소에 병행하여 시민감사·주민감사 개최 실적 또한 감소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참석수당 등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시민·주민감사 개최 실적(목표 10회) : 2017년 6회, 2018년 6회, 2019년 7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회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사무 관리비	17,500	11,899	5,601	32.0	16,100	9,804	6,296	39.1	16,100	6,728	9,372	58.2

○ 그럼에도 위원회의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투입할 수 없게 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국외업무여비, 국내여비 불용률 과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의 선진국가 옴부즈만 해외시찰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예산현액 15,000천원)의 불용률은 33.4%(5,011천원)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시 지급하는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예산현액 40,320천원)의 불용률은 48.8%(19,695천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회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국외 업무여비	10,000	8,177	1,823	18.2	10,000	7,900	2,100	21.0	15,000	9,989	5,011	33.4
국내여비	46,200	25,390	20,810	45.0	48,832	30,878	17,954	36.8	40,320	20,625	19,695	48.8

○ 2019년 제20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인원(3명→2명) 및 출장국가(4개국→3개국) 수가 축소되었음에도 ‘국외업무여비’ 불용률은 매년 증가추세(2017년 18.2% → 2018년 21.0% → 2019년 33.4%)에 있고,

- ‘국내여비’는 매년 40% 내외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위원회에서는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출장 수요에 대한 통계적 분석 활용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위원회는 국내여비 불용 과다에 대하여 관내 고충민원, 시민·주민감사, 공공사업만을 대상으로 조사·감사·감시하는 위원회 업무 특성상 관외출장이 많지 않고, 특히 고충민원의 경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면조사 및 응답소시스템을 통한 회신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사업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 종이류’의 경우 편성된 예산액(62만 4천원) 대비 679.6%(361만 7천원)를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과하게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3개 사업 5건에 2,62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산출내역	산출액	집행액	초과액	집행률
소 계		81,419	107,636	26,217	132.2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350,000원*2명*1회 -교재비6,000원*300부*1회	2,500	3,209	709	128.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000원*35명*8회	42,000	53,650	11,650	127.7
	○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000,000원*2회	4,000	4,171	171	104.3

세부사업	세부산출내역	산출액	집행액	초과액	집행률
기본경비	○ 기본사무종이류	624	4,241	3,617	679.6
	○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32,295	42,365	10,070	131.2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위원회의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매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